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협약서

- 사업명 : 가상화 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 사업
- 발주기관(A) : 강원대학교병원
- 제조사 또는 공급사(B) : (주)다우데이타
- 제품명 : VMware vSphere 8 Standard 96Core 5Year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위 사업명에 대하여 "A"는 발주자로서 "B"는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B"는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·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 ·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A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B"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 ·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A"와 "B"가 협의하는 금액 (49,920,000원-부가세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·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B"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B"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4년 03 월 21 일

"A" (발주기관명)

강원대학교병원



"B" (제조사 또는 공급사명)

(주)다우데이타

성 백 전